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한병도・황운하・진선미

양부남 · 장철민 · 김영배

이춘석 • 이해식 • 박용갑

이원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·교육, 의료, 주거·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정부 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료 감
	면)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
	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
	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군·구
	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
	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
	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
	신설·증설하는 경우 「공유재
	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
	의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	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감면할 수 있다.